

변경대비표

1. 변경내용 : 투자대상자산 조정
2. 변경적용일 : 2014년 10월 27일
3. 대비표
집합투자규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	6. 금리스왑거래.	(삭제)
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6.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 단, 금리스왑거래는 위험회피 목적에 한한다.	(삭제)
제20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

투자설명서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9. (신설)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(1) 투자대상 6.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%이하	(삭제)
제 4 부 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최신일 기준 업데이트)	라. 운용자산규모 (최신일 기준 업데이트)